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 적용 등>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896호)

2025.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채무자대리인제도의 확대 등 (안 제8조의2)	3
2. 채권추심자의 폭행·협박·불공정 행위 등의 금지 강화 등 (안 제9조 및 제12조)	10
3. 관계기관 의견	1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4. 11. 26.
3. 회 부 일 : 2024. 1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하면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일반금전대여채권자, 이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들을 제외한 채권추심자들의 경우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변호사나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기가 어렵고, 만약 이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일반금전대여채권자, 이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들은 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채무자에게 직접 접촉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여도 채권추심자의 연락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

음.

최근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이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등 살려고 빌린 돈으로 인해 목숨을 끊는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됨.

이에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 외에도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 방지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및 일반금전대여채권자 등 모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 금지행위의 성립요건에서 “반복적으로”와 “심하게” 요건을 삭제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9조제2호·제3호·제6호, 제12조제4호 등).

Ⅲ. 검토의견

1. 채무자대리인제도의 확대 등(안 제8조의2)

개정안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 관련 방문·연락 등을 할 수 없는 채권추심자¹⁾의 범위를 현행 대부업자 등 외에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도 포함하는 전체 채권추심자로 확대하고,

채무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현행 변호사·법무법인 등 외에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적기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u>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u>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① <u>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하는 자를

<신 설>	<u>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으로서 법무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인정을 받은 자</u> <u>② 제1항제3호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요건 및 절차는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	--

가. 현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임²⁾.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거나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은 채권추심에 대항하여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우며, 법적으로 면책된 채권이나 시효 소멸한 채권, 무효인 채권에 대한 추심에 대해서도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하여 가혹한 빚 독촉의 문제로부터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 채무자들이 채권추심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입지 않고 법률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임.

다만, 현행법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실제로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되고 있음.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 없는 한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에게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채권추심을 빙자한 폭행·협박 등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불법추심의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에까지 동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한 것임³⁾.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 제외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모든 채권추심자에게 확대 적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상술한 바와 같이 현행법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뿐 아니라 이들이 고용하거나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무등록대부업자 제외)도 채무자에 대한 방문·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대부업체의 채권추심행위에만 적용되는 정도로 제도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음.

3) 현행 제8조의2가 신설될 당시 2013. 6. 19.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13. 6. 26. 전체회의에서 악성 연체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활용되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 채권회수 권한을 위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용대출이 어려워지고 담보대출을 선호하는 결과를 가져와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다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음. 이후 채권추심 또한 적법한 채권 행사의 한 부분이라는 점, 채권추심이 사회적 상당성을 넘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도한 채권추심 우려가 크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취지로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을 적용 제외하는 내용으로 의결됨.

현실에서 이미 정보력, 조직력, 교섭력 등 모든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채권추심업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채무자에게 대리인을 통한 방어권을 인정하는 데 인색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특히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경우 성과에 연동되는 보수 구조상 강박적인 채권추심에 나설 유인이 있음에도 동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임.

아울러 외국의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채권을 양수한 자와 위임직 채권추심인 모두에게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적용되고, 일본 역시 대부업자는 물론 채권추심업무를 하거나 채권을 직접 양수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모두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권리 남용적 채권추심행위로 보고 있음.⁴⁾

개정안과 같이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을 받는 채권추심자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과도한 채권추심이나 불법추심에 대한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채권추심행위의 불법 또는 불공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

4) 김태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비교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463 (2017)

다만 위 논문에서는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를 규제하는 미국과 대부업자 및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일본과 달리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인 사인간 민사 금전채권자도 채권추심자에 포함하고 있어 채권추심행위 규제가 사인의 권리에 대한 지나친 개입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사인간 민사 금전채권자의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 간 채권관계의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행위는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음.

가 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부업자 등이 아닌 일반 채권자(제4호) 등도 채무자의 대리인 외에는 채무자와 접촉할 수가 없게 되면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의 우려가 비교적 적은 여신금융기관, 자산관리자, 채권추심회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도 채권추심업무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어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채무자가 변제 지연 등을 위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있으며, 금융기관 등의 신용대출 감소와 이자율 상승, 일반 채권자의 채권행위 기피 및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서민들이 채무를 얻는 데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함.⁵⁾

결론적으로, 채무자에게 연락이 금지되는 채권추심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가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정책적 필요성과 함께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 정도, 채권추심업계의 직업 활동 자유의 제약 가능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및 악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개정안은 채무자대리인으로 현행 변호사·법무법인 등 외에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5) 신용정보협회의 채권추심법 개정안 관련 건의

서민 채무자의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자력이나 경제력이 부족하여 자유롭게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채무자대리인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생기게 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해당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적 기업이 대리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경우 소송사무 대리 및 법률상담 등에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무를 하면서 대가를 받게 되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⁶⁾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⁷⁾이 있음.

2. 채권추심자의 폭행·협박·불공정 행위 등의 금지 강화 등(안 제9조 및 제12조)

개정안은 채권추심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의 요건 중 “반복적으로”와

6)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7) 법무부 의견 및 신용정보협회의 채권추심법 개정안 관련 건의

“심하게”를 삭제하여 금지행위의 요건을 완화하고(안 제9조 및 제12조),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안 제1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u>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u>심하게</u> 해치는 행위	2. <u>정당한 사유 없이</u> ----- ----- ----- ----- ----- ----- -----해치는 행위
3. <u>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u>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u>심하게</u> 해치는 행위	3. <u>정당한 사유 없이</u> ----- ----- ----- ----- ----- ----- -----해치는 행위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	5. ----- ----- ----- -----

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생략)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u>개인회생절차에 따라</u>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생략)	----- -----해치는 행위 6. ----- ----- ----- ----- -----해치는 행위 7. (현행과 같음)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 ----- ----- -----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 -----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러한 절차에 따라-----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현행과 같음)
---	--

(1) 채권추심자의 금지행위 요건 완화

현행법 제9조에서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거나(제3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거나(제5호),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제6호)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⁸⁾

아울러 현행법 제12조에서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제3호의2) 또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제4호)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⁹⁾

8) 참고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개정안은 금지행위의 요건 중 “반복적으로”와 “심하게”를 삭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안 제9조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거나(안 제9조제3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거나(안 제9조제5호),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안 제9조제6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또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안 제12조제3호의2) 또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안 제12조제4호),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1회라도)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¹⁰⁾

9) 참고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③ 제12조제3호·제3호의2·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참고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③ 제12조제3호·제3호의2·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채권추심자의 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보장하고자 현행법의 금지요건을 완화하여 규제되는 추심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나 “다른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제요구가 금지되거나 채무가 면책되었음에도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반복적으로’ 또는 ‘심하게’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통념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견지에서, 현행법에 비하여 제한의 폭을 확대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다만, 해당 금지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¹¹⁾에서 요건의 완화를 다른 입법례 등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고,¹²⁾

11)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한 경우는 이 법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12) 법무부의 경우 개정안에서 구성요건을 완화함에도 불구하고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변동이 없어,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이 더 중하거나 같으므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를 1회라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야간에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모든 행위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는데,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여부에 관한 분쟁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주간에는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일반 채권자들의 경우 채무자에게 접촉할 기회 및 방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무변제 요구 금지

안 제12조제4호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무변제를 요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¹³⁾하고 있어서 그 명령 전까지는 자유로운 추심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때문에,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¹⁴⁾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정안처럼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향후 법원의 중지명령 여부 등과 무관히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판단으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허용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① 채무자대리인 자격 확대(안 제8조의2)로 변호사를 보유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에 채권추심 대응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민이 부정확한 법률 사무처리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하고,

② 불법추심행위 성립요건 완화(안 제9조)시 구성요건을 완화함에도 불구하고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변동이 없어,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이 더 중하거나 같으므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③ 회생절차 진행 중 추심금지(안 제12조 제4호)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채권추심행위를 제한할 우려가 있고,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한 변제요구 중지·금지명령을 위반하면서 법령상 절차 외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 제12조제3호의²¹⁵⁾와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임.

신용정보협회는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 적용(안 제8조의2)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채무면탈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제도권 추심기능 약화로 서민 채무자들이 신용대출 축소·금리인상 등의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대한변호사협회는 채무자대리인 자격 확대(안 제8조의2)시 법률적인 역량이나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자들이 법률사건에 관여하게 될 수 있고, 채권추심자의 금지행위 요건 완화(안 제9조 및 제12조)의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추심회사들의 재산권을 정당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한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54

15)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